

투자위험등급:
4 등급
[낮은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종도환매가능), 추가형, 전환형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4. 판매 회사 : 금융투자협회(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ubs-hana.com) 홈페이지 참조
5. 작성 기준일 : 2015년 3월 31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5년 4월 20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 전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본문 중 전환에 관한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 기본운용방안

- 기본 포트폴리오는 초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성
-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향성(Duration) 전략과 섹터 전략 시행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 추가수익 기회 탐색으로 Relative Value Trading 전략 시행

■ 운용전략 구성(안)

운용전략	세부내용
Duration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인분석을 통한 방향성 탐색과 Duration전략 시행▪ 시장 Overshooting 발생에 따른 투자기회 발생시 탄력적인 시장대응
Sector Allo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펀더멘탈, 채권수급, 산업분석을 통해 최적의 Sector Allocation 실행
Relative Value Investment (Yield Enhanc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채권간 상대가치▪ Yield Curve Trading<ul style="list-style-type: none">* Slope Analysis, Shoulder & Rolling Effect, YC Riding
Security Se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발굴▪ 동일 만기/등급 대비 저 평가 종목 위주 편입

(2) 비교지수 : 매경BP종합채권지수(A-이상)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매경BP 종합채권지수(A-이상)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

■ 금리변동위험 관리방안



- Top-down 및 Bottom-up 을 병행한 리서치 활동
 - 금리 방향성에 의존한 잦은 드레이션(Duration) 대응 최소화
- 신용위험 관리방안
- 산업별/발행기업별 분산투자로 신용위험 최소화
 - 내부 신용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전문인력(Credit Analyst)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 투자자금의 만기를 감안한 자산 편입/운용으로 펀드내 적정 유동성 확보에 노력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5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 보다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이자율이 큰폭으로 상승하거나 신용등급 하락시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금리변동 및 신용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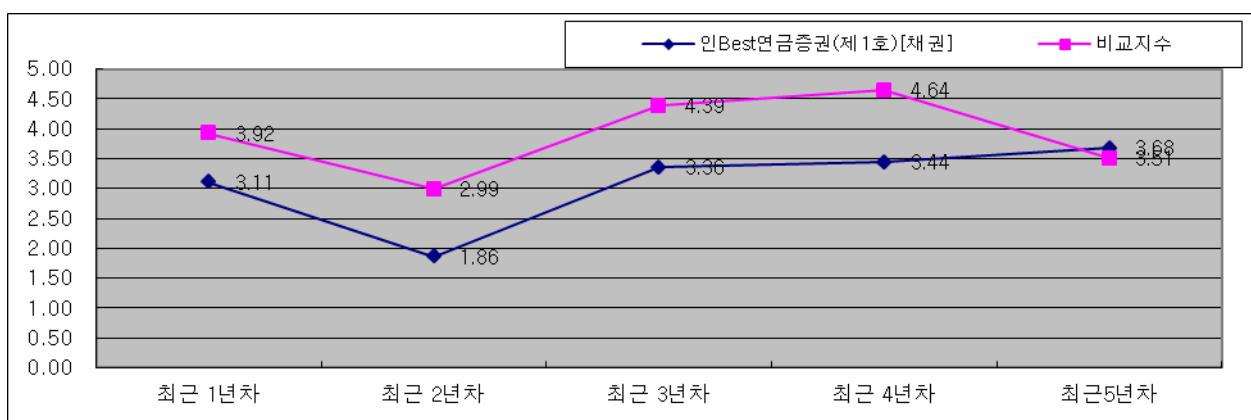
5. 운용전문인력 (2015.3.31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조익환	1980	과장	37개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9,346억 -	- KAIST 경영대학원 석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3.5년 - (현)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6. 투자실적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기준일: 2015년 1월 31일,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14/02/01~2015/01/31	2013/02/01~2014/01/31	2012/02/01~2013/01/31	2011/02/01~2012/01/31	2010/02/01~2011/01/31
인Best연금증권(제1호)[채권]	2001-02-01	3.11	1.86	3.36	3.44	3.68
비교지수	2001-02-01	3.92	2.99	4.39	4.64	3.51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260%	매 3 개월 후금
판매회사보수	0.650%	
신탁업자보수	0.040%	
일반사무관리보수	0.005%	
기타비용 ^{주 1)}	0.012%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0.967%	-
증권거래비용 ^{주 2)}	0.002%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년도 **2015.1.31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회계년도 **2015.1.31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단,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함)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 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비용	97,875	308,550	540,819	1,231,057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은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

[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 •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 제거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시 과세	연금소득 5.5%(종합과세 가능)

* '13.1.1~'13.2.28 가입한 계좌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

(단,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 5.5% 과세)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 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 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T+2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2월28일 이전에 “수익증권 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는 일부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오후 5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2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오후 5 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3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4. 전환절차 및 방법

가. 전환 절차, 방법 및 전환시 기준가격



(1)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판매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2월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는 일부 환매 및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2)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 3)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 4)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5) 하나UBS 인Best연금 China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6) 하나UBS 인Best연금 BRICs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7)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8) 하나UBS 인Best연금 유럽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9)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スマ트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10)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スマ트리턴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11) 하나UBS 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전환시 기준가격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영업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연금증권[채권]	타투자신탁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판매회사영업일

- 투자신탁간의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펀드	내용
인 Best 연금[주식]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pm 10\%$)을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에 투자하여 가치주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주식혼합]	투자신탁재산의 60% 이하를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50% 이하, 어음에 40% 이하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국공채]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China 자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pm 10\%$)을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두자신탁



[주식]	에 투자하여 중국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BRICs 플러스자[주식]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지역,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지역, 인도 및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 이머징 국공채자 [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수준($\pm 10\%$)을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머징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유럽포 커스증권자[주식-재 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인 Best 연금 글로벌 스마트리턴증권자[채 권혼합-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해외채권과 시니어론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스마트 리턴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 금 글로벌스마트하이 일드증권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하나 UBS 인 Best 연 금 글로벌롱숏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주 2) 다만,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판매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재무정보

(단위:원)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 14 기	제 13 기	제 12 기
	2015.01.31	2014.01.31	2013.01.31
운용자산	76,081,255,371	73,875,415,956	70,445,736,825
유가증권	67,510,881,690	67,621,270,303	57,317,646,904
현금 및 예치금	3,717,693,320	950,049,393	495,574,812
기타 운용자산	4,852,680,361	5,304,096,260	12,632,515,109
기타자산	390,388,033	384,959,456	361,325,926
자산총계	76,471,643,404	74,260,375,412	70,807,062,751
기타부채	2,493,511,990	1,540,297,198	2,489,466,918
부채총계	2,493,511,990	1,540,297,198	2,489,466,918
원본	73,978,131,414	72,720,078,214	68,317,595,833
자본총계	73,978,131,414	72,720,078,214	68,317,595,833
운용수익	3,047,727,464	1,988,979,176	2,720,471,029
이자수익	2,364,131,630	2,438,283,020	2,552,981,939
매매/평가차익(손)	683,576,417	-449,367,680	163,753,135
기타수익	19,417	63,836	3,735,955
운용비용	727,529,320	692,427,654	663,609,339
관련회사보수	718,721,619	683,298,632	654,733,371
매매수수료	695,931	1,713,772	1,246,882
기타비용	8,111,770	7,415,250	7,629,086
당기순이익	2,320,198,144	1,296,551,522	2,056,861,690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고객 보관용)

집합투자기구(펀드)명칭 :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가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၁၀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판매회사 보관용)

◆ 접합투자기구(펀드)명칭 : 하나UBS 이Best연금 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원

설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듣고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Page 1

고객 설명서 또는 (인)

